

대 검 찰 청

1999 대 검 61157-

1999. 12. 23.

수 신 : 이 승 희 귀하

발 신 대 검 찰 청

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의3

안국빌딩 신관3층(참여연대)

검 사 한 광 수



제 목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

이건희외 8명에 대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처	사 건 번 호	1999 년 재항 3501 호
	년 월 일	1999. 12. 23.
분	결 과	<p>결정주문 : 재항고기각</p> <p>이 유 :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</p>

비 고